

의안번호	2219865
의 퇴 인	김용만의원
회 답 일	2026.7.28.
추계번호	26C34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제6항 (금연을 위한 조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 입주하거나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조제6항 (금연을 위한 조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금연을 위한 조치(안 제9조제6항)

- 개정안에 따라 금연구역 범위에 학원¹⁾이 입주하거나 위치한 건물의 30미터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내의 구역을 포함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의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 구역과 그 수량이 특정되어야 하나,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학원은 일정 면적의 교지·교사를 보유한 학교와 달리, 다수의 학원이 입주한 복합상가건물이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금연구역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거나 안내표지 설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안내표지의 종류(표지판, 스티커 등) 및 개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재정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참고로, 2025년 기준 전국 사설 학원 수는 94,866개소에 달하며, 개정안에 따른 학원 중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학교 시설의 30미터 이내의 구역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